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20가단50217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변 론 종 결 2020. 10. 30.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피고와 D(E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3. 5.자 명의신탁 해지 합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4. 10. 접수 제12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2018. 10.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함과 아울러 D로부터 계불입금 28,450,000원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고, 원고 B는 2018. 10. 24. D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1.경 D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D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답변서는 2019.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소송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5.자 명의신탁 해지1)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4. 10. 접수 제12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의 사해행위성을 두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두고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3년경 그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중국 소재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여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등으로 자산의 안정적 관리가 여의치 않았다. 그 때문에 전업주부로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던 D의 명의로 매입한 것일 뿐이었다.

○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배우자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애초에 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여부 및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 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4, 8, 13, 1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 중 일부는 D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전업주부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돈을 포함한 모든 매수자금을 피고가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설령 피고가 전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자금의 증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D 소유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매수자금의 출처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관한 합리적 동기가 인정됨이 없이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중국 소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1999년 당시 서울 용산구 F 소재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구입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출국과 입국이 수시로 빈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상가이기는 하나 이를 관리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2007년경부터 D가 계에 가입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가산을 탕진함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19. 1.경 협의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을 하게 된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도 20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D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산을 탕진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D 자신이 저지른 경제적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D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의 우려 때문에 비로소 명의신탁을 빙자하여 소송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장기간 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3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기도 하여 실제 소유자로 보일만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 수탁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4. 사행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도 없다.

○ 그러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3. 5.자 명의신탁 해지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신현일

별지

목 록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491.943㎡

2층 491.943㎡

3층 491.943㎡

4층 491.943㎡

5층 491.943㎡

지하1층 587.500㎡

지하2층 587.500㎡

지하3층 569.5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대 70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30.24㎡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709.0분의 9.883

1) 원고들은,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D의 답변서가 송달된 2019. 3. 5.을 명의신탁 해지일로 특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2019. 4. 9.자 신탁해지로 기재되어 있고 양자는 동일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와 D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 합치는 2019. 3. 5.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2019. 3. 5.자 명의신탁 해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을 특정한다.